

변경 대비 표

<글로벌 IPO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(주식혼합)>

● 변경시행일 : 2026.02.27

- 변경 목적 : 제36조 환매수수료 개정

	현 행	변경(안)	비 고
제36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2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정 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 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65일 미만 : 이익금의 8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	
부칙		<p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p>	